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7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박희승 • 윤준병 • 한병도

정진욱 · 서영석 · 한민수

김한규 • 박민규 • 김남희

이성윤 · 김정호 · 임미애

김성환 • 백혜련 • 정성호

위성곤 · 김영호 · 서영교

소병훈 • 한정애 • 어기구

주철현 · 황명선 · 최기상

안규백 • 이수진 • 위성락

이춘석 · 김남근 · 박범계

신영대 · 조인철 · 신정훈

김 윤 · 임오경 · 서삼석

서미화 • 복기왕 • 민형배

정준호 • 박지원 • 이개호

김교흥 · 김준혁 · 김영배

임광현 · 안도걸 · 이광희

윤호중 • 전진숙 • 강득구

장종태 · 강준혂 · 오세희

문진석 • 이원택 • 이재정

김태년 · 김민석 · 김 현

안태준 • 추미애 • 윤후덕

의원(6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.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,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.

뿐만 아니라 내과·외과·소아과·응급의학과·산부인과·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응급, 심뇌혈관질환,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,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.

아울러 2003년 사스, 2009년 신종플루, 2015년 메르스, 2019년 코로 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, 지난 코 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 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

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·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,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.

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.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함.

이에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·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19	「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·운영에 관한	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	2028. 12. 31.
	법률」 제33조	여	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